

##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

[시행 2024. 8. 7.] [대통령령 제34812호, 2024. 8. 6., 일부개정]

### 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임금채권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3호, 2024. 2. 6. 공포, 8. 7. 시행)됨에 따라,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요건을 ‘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일 것’과 ‘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’으로 정하고,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,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,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### 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(인)

2024년 8월 6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

○ 대통령령 제34812호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)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해당 사업주의 사망·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「민법」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(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해당 사업주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3.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을 해당 사업주가 전액 변제한 경우
4.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업주가 변제하고,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의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23조의3(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)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

액"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.

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

제24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사항은 제외한다.

제24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

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(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한 주소·거소 또는 재산의 조사 및 납부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가.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것

나. 가목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이 근로자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

2.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(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)

3.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질문(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)

제25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

부칙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